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회의결

안 건 번 호 제2023-010-109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79575)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3. 6. 14.

주 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의류·생활용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4. 13.)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2. 29. ~ '23. 4. 11.)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의류·생활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3. 1. 1.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기원 회원 비회원	 (회원 주문(가입) 시> ► SNS 가입 시 : ► 주문 시 : (비회원 주문 시> 	THE	12 T
	합 계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인지·대응 내용			
'22. 4. 8.(금)	18:37	고객센터 1:1 문의를 통해 '비회원의 상품 배송지 수정 기능' 관련 개인정보 유출 민원이 게시(업무시간 종료 후)됨 ※ 비회원인 민원인은 배송지 수정 페이지(화면)에서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함			
'22. 4. 11.(월	10:34	CX(customer experience)팀이 상기 이슈 및 민원 고객정보 추가 확인			
09:53		CX팀에서 관련 부서(주문개발팀, 정보보안팀)로 민원 내용 전달			
'22. 4. 12.	10:18	원인 분석 및 개인정보유출 대응 조치 ※ 비회원이 배송지 변경 시, 빈 화면이 조회되도록 소스코드 개선 조치 완료			
'22. 4. 13.	00:45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22. 4. 13.	19:13	개인정보 유출 고객 대상으로 유출 사실 통지(전화)			

2)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10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었다.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앱)의 배송지 변경 기능을 개선하면서 개발 오류로 인해 회원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심인은 쇼핑몰 회원이 주문 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할 주소지 직접 입력으로 인한 오류·불편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배송지 목록'이 자동 호출^{*} 되는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21.11.10.)하였으나,

* 피심인은 최대 10건의 정보가 자동 조회될 수 있도록 기본 설정하여 운영함

비회원인 경우, 배송지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비회원의 배송지 변경 시에도 자동 호출 기능이 작동**되어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 * 회원/비회원에 따라 각각 이동하는 URL을 달리해야 하는데, 시스템 개선 작업 중 이동하는 경로를 회원/비회원 모두 동일한 URL(배송지 목록)로 오기입
- ** 비회원이 주문 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최근 배송이 완료된 회원 10명의 배송지 정보가 보여짐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모바일 환경의 배송지 변경 기능을 개선하면서 개발 오류로, 접근 권한이 없는 비회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배송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4. 8.(금)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접수된 민원을 '22. 4. 11.(월) 10:34에 확인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 피심인은 정확한 정황 파악을 위해 민원인에게 비회원 주문번호·주문자명 확인을 요청하였고, 민원인은 '22. 4. 11. 11:02에 관련 사항을 즉시 회신함

해당 민원을 '22. 4. 12.(화) 09:53에 관련 부서(주문개발팀, 정보보안팀)로 전달하여 '22. 4. 13. 00:45에 유출 신고하고, 같은 날 19:13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4. 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4.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모바일 환경의 배송지 변경 기능을 개선하면서 개발 오류로 인해 열람 권한이 없는 비회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인 배송지 정보가 열람 가능하였으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22. 4. 11.에 확인한 민원 내용*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하루 경과 후 관련 부서로 전달하여 '22. 4. 13.에 통지·신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민원인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오류 발생 일시, 접속 환경, 상세 내용과 함께 타인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이미지를 첨부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민원인의 주문번호·주문자명까지 확인함

파타인의 위한사용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보호법 §29	§48의2① 제2호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고시§4⑨)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보호법 §39의4①	§48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한 행위			

< 피심인의 위반사항 >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1회 있으므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 위반

행위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 '21. 11. 10.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의결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5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및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 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되네표 단말레크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안전조치의무 (접근통제)	1,200만 원	120만원	600만원	720만원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통지·신고 지연)	600만 원	60만원	300만원	360만원	
	계			1,080만원	

< 과태료 산출내역 >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720만원	
	ti	법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2023. 6. 14.	과태료 부과 360만원	

2023년 6월 14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6호·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대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대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대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대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대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6월 14일

위원장 고학수 (서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강 정 화 (서 명) 위 원 위 원 고 성 학 (서 명)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원 지성우 (서명) 위